

(주)아모레퍼시픽그룹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,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으로 규정한 내부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내부거래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고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제4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5조 (종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6조 (소집권자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된 날짜가 빠른 순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선임된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협의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.
- ② 간사는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각 위원에 대하여 모사전송, 전보,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(컴퓨터통신, 전자우편 등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(심의·의결사항)

-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한 내부거래
- ② 기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9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1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12조 (간사)

위원회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.

제13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